

의안번호	2213680
의 퇴 인	이정문의원
회 답 일	2026.3.23.
추계번호	25D5664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훈의료지원 사업 평가, 보훈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7억 600만원(연평균 1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178	0	0	0	0	178	36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6	6	6	6	6	30	6
보훈의료지원 사업 평가	116	0	0	123	0	239	48
보훈의료실태조사	125	0	0	133	0	259	52
합계	426	6	6	262	6	706	141

주: 보훈주치의 제도 실시에 따른 재정소요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보훈의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종합계획에는 보훈의료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실태 및 보훈의료지원의 현황, 보훈의료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보훈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보훈의료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및 신규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훈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7조 (보훈의료정책 심의위원회)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보훈의료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이 경우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실장급 이상 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실장급 이상 직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함(제3항)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9조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	국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준(準)보훈병원의 지정·관리·운영·해지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12조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진료)	국가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11조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3조 (국비지원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비지원대상자가 이 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급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 이용 비용과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를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음(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4조 (국비지원대상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국비지원대상자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급여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함. (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5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그 상이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제1항) 보훈병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처가 치아상실인 경우(일부 또는 전부 상실), 상실 치아에 대한 치아보철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8	안 제16조 (보철구의 지급, 유지 및 보수)	국비지원대상자 중 상이처(傷痕處, 질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철구의 지급, 유지 및 보수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9	안 제17조 (감면지원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감면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보철구대(補綴具代), 상급병실 이용비용 등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지원대상자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함(제1항)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음(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8조 (감면지원대상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감면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면지원대상자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11	안 제19조 (가족지원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가족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보철구대(補綴具代), 상급병실 이용비용 등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지원대상자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함(제1항)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음(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12	안 제20조 (가족지원대상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가족지원대상자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족지원대상자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2조 (재활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의학적 재활, 심리적 재활 및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제1항, 제2항 및 제3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에 예산을 보조할 수 있음(제4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14	안 제23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24조 (보훈주치의 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주치의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16	안 제25조 (국고지원)	국가는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진료를 실시한 경우,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국고에서 지원함	의무규정
17	안 제26조 (보훈의료 지원비용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31조 (보훈의료지원 사업의 평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보훈의료지원제도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훈의료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항)	재량규정
19	안 제32조 (보훈의료실태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훈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등)	○	—
2	안 제7조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	—
3	안 제9조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령을 근거로 기 추진
4	안 제12조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진료)	—	
5	안 제13조 (국비지원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	
6	안 제14조 (국비지원대상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	
7	안 제15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지원)	—	
8	안 제16조 (보철구의 지급, 유지 및 보수)	—	
9	안 제17조 (감면지원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	
10	안 제18조 (감면지원대상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	
11	안 제19조 (가족지원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	
12	안 제20조 (가족지원대상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	
13	안 제22조 (재활 지원)	—	
14	안 제23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지원)		
15	안 제24조 (보훈주치의 제도)	×	보훈주치의 제도를 실시할 경우, 주치의의 보훈대상자 진료 및 관리행위에 대한 지불·보상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미비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16	안 제25조 (국고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령을 근거로 기 추진
17	안 제26조 (보훈의료 지원비용 보조)	—	
18	안 제31조 (보훈의료지원 사업의 평가)	○	—
19	안 제32조 (보훈의료실태조사)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다만, 국비지원대상자, 감면지원대상자 및 가족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령을 근거로 이미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추계에서 제외함
- 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¹⁾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하게 되었고, 2026년 8월부터 강원과 제주에 준보훈병원을 각 1개씩 지정할 계획이며, 2026년에 17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추계에서 제외함

□ 제정안에 따라 보훈주치의 제도(안 제24조)의 도입 시, 주치의의 보훈대상자 진료 및 관리행위에 대한 지불·보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

1) 2026년 1월 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보훈대상자 지원 법률이 개정되었음

상되나 주치의 지불·보상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미비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 추계에서는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보훈의료지원 사업의 평가(안 제31조), 보훈의료실태조사 실시(안 제32조)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²⁾을 적용하여 산정함
-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7~2031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 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보훈의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계획에는 보훈의료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실태 및 보훈의료지원의 현황, 보훈의료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보훈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보훈의료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및 신규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훈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추계에서는 시행 첫해인 2027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유사 계획의 정책연구용역 사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1)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소비자물가상승률(%)	0.8	6.7	4.6	3.7	6.2	3.2	4.0	3.9

[표 2] 유사 정책연구용역 사례사례

구분	주요내용
발주처	보건복지부
용역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연구
수행년도	2020년
금액	147,000,000원
수행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자료: 국가보훈부

[표 3]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0	합계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178	0	0	0	0	1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보훈의료정책심의회 구성·운영(안 제7조)

- 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료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보훈의료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실장급 이상 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실장급 이상 직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계에서는 위원 15명 중 회의참석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을 11명, 연간 2회 회의를 개최하며, 1인당 회의참석수당은 25만원으로 가정함

[표 4] 보훈의료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11	11	11	11	11	—
회의개최	2	2	2	2	2	—
회의참석수당	0.25	0.25	0.25	0.25	0.25	—
추가재정소요	6	6	6	6	6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보훈의료지원 사업 평가(안 제31조)

- 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보훈의료지원제도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훈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훈부는 현재 보훈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할 예정이라고 설명
 - 보훈의료실태조사 주기와 동일하게 3년마다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법 시행 첫해인 2027년과 2030년에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 정책연구용역의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 연구용역 단가 평균을 산정함

[표 5] 유사 정책연구용역 사례사례

용역명	기관명	연도	수행	금액
재활의료기관 치료성과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국립교통재활병원	54,545,455
공공병원 혁신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보건복지부	2024	한국행정연구원	69,000,000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건복지부	2019	국립중앙의료원	254,500,000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평가	보건복지부	2016	(주)갈렘앤컴퍼니	39,700,700
의료기관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20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5,200,000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지원 사업 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6] 보훈의료지원 사업 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0	합계
보훈의료지원 사업 평가	116	0	0	123	0	2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보훈의료실태조사(안 제32조)

□ 제정안은 보훈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훈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현재 보훈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할 예정이라고 설명
- 실태조사는 법 시행 첫해인 2027년과 2030년에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 정책연구용역의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실태조사 실시 비용을 산정함

[표 7] 유사 정책연구용역 사례

구분	주요내용
발주처	보건복지부
용역명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수행년도	2021년
금액	106,096,360원
수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지원 사업 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8] 보훈의료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0	합계
보훈의료실태조사	125	0	0	133	0	2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훈의료지원 사업 평가, 보훈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7억 600만원(연평균 1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178	0	0	0	0	178	36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6	6	6	6	6	30	6
보훈의료지원 사업 평가	116	0	0	123	0	239	48
보훈의료실태조사	125	0	0	133	0	259	52
합계	426	6	6	262	6	706	141

주: 보훈주치의 제도 실시에 따른 재정소요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에서는 보훈주치의 제도와 관련하여 주치의에 대한 지불·보상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비로 추계에서 제외하였으며, 보훈의료종합계획, 보훈의료지원 사업 평가, 보훈의료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 정책연구용역의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